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연구

김영환*

A Research on th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ased

Young-Hwan Kim *

요약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 등을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lsworth)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야후 측에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 이들과 관련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지난 천안함 사태시 전몰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대한 문제와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의 관계에 집중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관련 판례의 동향과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emand that needs 'Digital Legacy', a notion that an Internet user can transfer his private blogs, e-mail and financial assets to inheritors and party interested when he died suddenly in the accident, has been growing recently. This issue has become a social hot potato since Justine Ellsworth's father in USA sued Yahoo for the right to access his son's Yahoo e-mail account after Justine Ellsworth had died in Iraq, in November, 2004 and the problems happened to deal with suicide-related blogs and homepages when great entertainers in Korea committed suicide and soldiers' parents in the situation of warship Chonan tragedy in Korea demanded access to soldiers' homepages and e-mail accounts. The point at issue focuses on the property matters about th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a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ased and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and laws related to th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ased and suggests the preliminary data of the next research.

▶ Keyword : 사자(the deceased),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제1저자 : 김영환

• 투고일 : 2010. 12. 06, 심사일 : 2010. 12. 10, 게재확정일 : 2010. 12. 12.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1만명으로, 2000년의 1,904만명 이후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77.8%로 33.1%p 증가하였다고 한다[1]. 특히 인터넷 이용자층의 증가와 의존도가 대폭 높아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이메일 중심에서 메신저, 블로그, SNS로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폭발적인 인터넷 이용 증가와 함께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우리보다 인터넷 활용의 역사가 오래인 미국의 경우에는 2005년 4월 미국 미시간주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2] 이는 2004년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sworth)의 아버지가 아들이 이라크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알고자 하여, 야후 측에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으나, 야후 측에서 아들뿐 아니라 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아들의 야후 이메일에 대한 패스워드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의 상속과 폐기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 이들과 관련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3] 최근에는 친안함 전문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4]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대한 문제이다.[5] 둘째는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 InternetService Provider)와의 관계이다.[6] 이하에서는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련 판례의 동향과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판례

1. 사자(死者)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

1.1. 대법원 2002.7.12.선고(대판2002도745)

1.1.1. 사실관계

2000.10. 초순경 B가 A에게 피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도록 요구하고, A는 이를 승낙한 후, 2000.10.14.15:00경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건이다.

1.1.2. 판결요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먼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였다. 다음으로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하였다.

2. 사자(死者)와 ISP의 관계

2.1. 대법원 2005.11.25.선고(대판2005도870)

2.1.1. 사실관계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공소의 소령이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육군본부 등에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예하 장교와 사병들에게 공지 시킴에 따라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로 소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육군 웹메일과 핸드오피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소령 명의로 대장인 1군사령관에게 “군사령관 보아라. 네놈이 감히 최대위(피고인을 지칭)를 징계하려고 했던 것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장성 하나쯤 인사 처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몸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인 소령의 육군 웹메일 및 핸드오피스 계정에 각 침입한 사건이다.

2.1.2. 판결요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 때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은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라 판시하였다.

2.2. 대법원 2007.6.14.선고(대판2007도2162)

2.2.1.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의 한 신용정보주식회사 남부카드지점의 채권관리사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12.1.경부터 2005.2.4.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의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고 및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 명단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네이

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공소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다.

2.2.2. 판결요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2.3. 대법원 2010.7.22.선고(대판2010도63)

2.3.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의 4 모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 게임의 회원인바, 2006.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게임 bastjms 계정 린텔 서버 천사 루시퍼 캐릭터의 접속정보를 공소의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 공소의 3에게 양도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계정의 최초명의자는 게임 운영 회사에 본인임을 인정받을 경우 임시로 접속정보의 퀴즈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위 캐릭터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정보를 훼손한 사건이다.

2.3.2. 판결요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2007.1.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 법률 제 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먼저 현재 대법원 판례 중에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2002년 7월 12일 선고한 '대판2002도745' 판결을 통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재산성을 부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부정된다고 물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IT환경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이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2010년 7월 22일 선고, 대판 2010도63 판례에서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대한 소유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재산성을 일응 긍정하고 있는 듯 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전자문서와 '구성형식·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홈페이지 또한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이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2005년 11월 25일 선고, 대판2005도870 판결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접근 권한에 관하여,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①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②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③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

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 대판2007도2162 판결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 된다"고 보고 있어, 사자(死者)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대상 적격성을 부인하고 있어, 사자(死者) 디지털 정보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III. 관련 법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쟁점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1986년 5월 12일에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3848호)"이 그 시초로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 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7]

이후 1999년 2월 8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835호)"로 전면 개정되었다가 [8],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360호)"로 전면 개정하였고, [9]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66호로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쟁점사항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쟁점 법문은 다음과 같다.[10] 먼저 제24조의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다음 제25조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처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도달하거나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는 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동의를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9조에서는 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상과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71조 벌칙 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법률안

3.1. 사자(死者) 디지털 정보에 관한 입법 추진

서언에서 밝힌바와 같은 최근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하여 2010년 기준, 입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다음의 3건이다.

먼저 2010년 7월 12일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문을 신설하고자 제안하였다.[11]

유의원 신설안 제29조의2(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2010년 7월 21일 박대해 의원과 2010년 9월 9일 김규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 다음과 같이 범문을 신설하고자 제안하였다.[12][13]

박의원 신설안 제25조의2(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의원 신설안 제30조의2(미니홈피등의 관리자 지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실종 또는 의식이 불명한 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의원 신설안 제71조 제3호의2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

김의원 신설안 제25조의2(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의원 신설안 제28조의3(사망자의 통보)

①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2.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의원 신설안 제29조 제5호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로 통보된 경우

3.2.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입법안들은 모두 대동소이한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니홈피등 특정 디지털 정보 콘텐츠에 집중된 입법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는 향후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정보 콘텐츠가 이슈화 되었을 때,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야 하는 맹점을 안고 있어, 사후약방문 격의 입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민법 등,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관계 법령들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 IT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에게 기술과 제도의 관계 설정과 그 역할이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유

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이 제도가 기술을 뒤따르고 있는 현실은 미래지향적인 IT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는 이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관련 판결과 법률 및 입법동향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이 있다. 먼저 입법의 범위이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자율적인 규제의 형태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입법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디지털 정보의 정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의 측면에서 특정 지어져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관련 법익들과의 형평성 및 관계가 문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미리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IT기술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60200&bbid=3&itemId=786>
- [2]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6/2010042602664.html
- [3] For example, in case of Choi Jin-sil who committed suicide on October 2, 2008, the last updates of her mini-hompy were made On July 27, 2010 by the standard of November, 2010.: <http://www.cyworld.com/choijinsil>
- [4]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11241652001&pt=nv>
- [5] If these property matters are accepted, it is possible to inherit by related laws.
- [6] These will include the matters related to the deceased's inheritors and party interested.
- [7]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3&chrClsCd=010202#0000>
- [8]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1&chrClsCd=010202#0000>
- [9]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505&chrClsCd=010202#0000>
- [1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829&chrClsCd=010202#0000>
- [1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R0V007E112D1H7H0L9J5R1J1L4A3
- [1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Y0R0S7R2K1A100X4B9I0P4K7Z5B3
- [1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R0P0L9J0Y9E1C5C2Z300A8G3W5I1

저자 소개



김영환

2002 : 조선대학교 행정학박사.

2005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
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범죄, 범죄정보시스템